#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 철 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3-40 발의연월일: 2023. 2. 24.

발 의 자: 전철규, 한상욱, 고찬양,

이충현, 박성호, 최세진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 실현과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청구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 '거소'용어를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용어 삭제(안 제2조, 안 제8조 및 제9조)
- 나.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법에서 이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안 제3조)

다. 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내용 개정(안 제4조)

라.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안 제5조)

마. 상위법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안 제8조)

바. 상위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복 내용 등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협조부서 : 자치행정과

다. 입법예고 : 2023. 2. 27. ~ 3. 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강서구""를 "'구""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다.

제5조의 제목 "(투표청구 주민수)"를 "(투표청구 주민의 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4분"을 "20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또는 체류지
-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 중 "구분하여 작성"을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과"를

"의장 및"으로, "7명 이상"을 "11명 이하"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대담 토론회"를 "대담·토론회"로 한다.

제18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게재로써"를 "게재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역	인대표자증명	서 교부신청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78 78		(성별)		
	주소		( 7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 ]신기	청 []필요없음		
<u>주민투표실시구</u>					
<u>역 변경</u>	<변경 사유>				
「즈미트교버.	게10조계1하세 m	l리 청그이리고기 3	증명서의 교부를 신	청하나다	
一十七十五日」	세10조세18세 떠	「다 경무인네효사 7	중경시커 포구글 신	78百94.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를 기재
-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구인서명부

서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 작성요령

-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는다.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연월일	비고

#### ※ 작성요령

-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음.
-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기재.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u>(구의 책무)</u> ① ~ ③ (생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③		
략)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4		
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u>	<u>भ</u>		
<u>외국민 또는 외국인</u> 이 주민투표	<u>국인</u>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5.21, 개정 2016.9.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u>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u>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	<u> 인명부</u>		
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u>"강서구"</u> 라 한다)	<u>"¬"</u>		
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			
리 관계 <u>법령의 규정에 의하여</u>	<u>법령에 따라</u>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사람</u> 은	<u>외국인</u>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u>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u>		
<u>같다.</u>	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법 제7조에 따른다.		

<u>설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한</u> <u>사항</u>

-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 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사업의 실시에 대한 사항
-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
   을 듣도록 한 사항
-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주요 결정사항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② (생략)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 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u> </u>
<u>20분</u>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u>서명요청권위임신고</u> <u>증 또는 그 사본</u>을 덧붙여야 한 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정 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u>구분</u>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단서</td>

 신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u>중</u>
<b></b>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
성) ①
<u>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u>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 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u> 1. 성명</u>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② <u>작성</u> -
<u>다만, 법</u>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
• 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 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 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 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 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 게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ㅣ 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하여야 한다.
제	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u>주소</u>
제	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u>청구인서명부(전자청</u>
	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
	물을 말한다)
	O (5) -9 1 1 0 0

# ② ~ ④ (현행과 같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 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서명의 확인

-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3.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ㆍ 결정
-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한다.
- 1. 강서구의 4급 이상 공무원 2.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강서

-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 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 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 의장 및 ---------- 11명 이하--------- 의장은 부구청 서 호선(互選)한다.

<삭 제>

<삭 제>

구의회 의원

-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 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 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 |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 | 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

<삭 제>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 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생 략)

 <신 설>

-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생략)
-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u>대담 토론회</u>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할 수 있다.
-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제18조(공표방법 등) -----항·제9조제4항·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제12조제8항 ------

- 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 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삭 제>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6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u>대담·토</u>
<u>론회</u>
·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 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 3조제2항 및 <u>제26조제1항</u> 후단 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 페이지에 게시 또는 <u>게재로써</u> 한다.

<u>제26</u> 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u>게재하는</u>
<u> 방법으로</u>
<b>.</b>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주민투표법」

-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 · 의결 및 집행
  - 나. 회계 · 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 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 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 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 · 전자개표의 실시
  -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
  - ·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